

구매기본계약서

에드워드코리아 주식회사와 _____ 는(은) 구매기본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정의 및 계약의 형식

1.1 본 조건에서:

"Edwards" 란 구매주문 상에 지명된 Edwards 회사를 의미한다.

"Edwards 자산(Edwards Property)"이란 Edwards 소유의 또는 Edwards가 책임을 지는 자재, 장비, 공구 또는 기타 자산을 의미한다.

"본 조건(Conditions)"이란 본 구매기본조건상에 명시된 조건을 의미한다.

"본 계약(Contract)"이란 본건 제품 및/또는 본건 서비스를 위한 구매주문 및 본 조건 상에 명시된 본건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Edwards에 대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의미한다. 구매주문의 조건과 본 조건이 상이한 경우, 구매주문이 우선한다.

"본건 제품(Goods)"이란 구매주문 상에 명시된 제품을 의미한다.

"구매주문(Purchase Order)"이란 본 조건이 첨부되며 공급자에 대해 Edwards 가 발행하는 Edwards의 공식 구매주문으로 본 조건 및 그에 대한 도안, 부속서, 명세서 및 기타 첨부물을 포함한다.

"본건 서비스(Services)"란 구매주문에 명시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명세서(Specification)" 란 구매주문상에 명시되거나 참조된 본건 제품 및/또는 본건 서비스의 명세서를 의미한다.

"공급자(Supplier)"란 구매주문 수신 회사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1.2 계약은 공급자에 의한 구매주문의 수용 시 성립된다.

1.3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공급자에 의한 구매주문 및 본 조건의 최종적인 수용을 구성한다; 서면(전자 문서 포함) 또는 구두 수용 또는 본건 제품의 공급이나 본건 서비스의 이행의 개시.

1.4 본 조건은 Edwards 에게 부여된 견적의 조건이나 공급자에 의해 수용된 또는 수용되는 구매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기타 조건을 제외하고 계약에 적용된다.

2. 본건 제품의 검사, 배송 및 이행

2.1 공급자는 Edwards 에게 제품 배송 전 언제든지 공급자의 부지 혹은 다른 장소에서 본건 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공급자는 Edwards에게 완성된 본건 제품의 검사 가능 시기를 합리적인 기간내에 사전 통지한다. Edwards에 의한 본건 제품의 검사는 공급자의본건 제품에 대한 책임이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으며 그 수락(acceptance)을 의미하지 않는다. Edwards는 배송 후 본건 제품을 불합격통보하여 거절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보유하면서 이와 같은 배송 전 검사권을 포기할 수 있다

2.2 공급자는 (i) 구매주문 상에 명시된 가격 및 인도 일정 및 (ii) 구매주문에 명시된 현상으로서의 Incoterms 2020에 의한 DDP 인도조건 및(iii) 본 계약에 따라 본건 제품을 배송한다.

2.3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제품 인도 관련 문서가 모든 본건 제품에 포함된다: 구매주문 번호, 해당 제품의 설명 및 공급자명, 용량을 명시하는 측정 단위, 수량 및 해당 제품의 배송 지점 등 해당사항

2.4 본건 제품 및/또는 본건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은 (i) 그 제품 또는 서비스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한 대금 지급일 또는 (ii) 그 제품 또는 서비스의 배송일 중 빠른 날에 Edwards 로 이전된다. 본건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이 Edwards 에게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여전히 공급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는 제품이 Edwards 자산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본건 제품을 다른 제품과 분리하여 보관한다.

2.5 Edwards는 배송된 본건 제품이 본건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본건제품 불합격 통보하여 거절할 수 있으며 Edwards 가 해당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Edwards가 배달 후 본건 제품을 검사할 합리적인 기간을 갖거나 나중에 잠재해자가 분명히 드러난 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Edwards 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6 공급자가 본건 제품을 본건 계약의 조건에 따라 배송하지 못하거나 Edwards 가 제2.5 조에 의하여 본건 제품을 거절하는 경우, Edwards는 Edwards가 본건 계약 및 기타의 원인으로 갖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한 채 자신의

선택으로 다음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6.1 공급자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급자의 비용으로 배송되지 않은 또는 거절된 제품을 제거, 수리 또는 교체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은 그 후 즉시 공급자의 위험부담 하에 보관된다.
- 2.6.2 제3 자로부터 본건 제품의 대체품을 취득하고 대체품 취득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과 경비를 공급자에게 청구하여 공급자로부터 변제 받는다.
- 2.6.3 본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본건 계약에 의한 본건 제품의 추가적 탁송(consignment)의 수용을 거부한다.
- 2.6.4 본건 계약을 중단하고 공급자로부터의 본건 제품의 추가 인도 분의 수용을 거부한다.
- 2.7 공급자는 Edwards 가 수시로 발행하는 모든 포장 관련 명세서(Specification)를 준수하고 포장재의 대부분을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용하며 하며 Edwards의 요청 시 Edwards 로부터 포장재를 무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 2.8 Edwards는 원자재의 증명서를 요청하고 본건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자재 및 장비의 증명서를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본건 서비스의 이행

- 3.1 , 공급자가 본건 계약의 조건에 따라 특정 일자까지 본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Edwards 가 본건 서비스를 거절하는 경우, Edwards가 본건 계약 등으로 가질 수 있는 기타 권리를 유지한 채 Edwards는 자신의 선택으로 다음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3.1.1 공급자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급자의 비용으로 본건 서비스를 재이행하도록 요청한다.
 - 3.1.2 제3 자로부터 본건 서비스의 대체 서비스를 받고 대체 서비스와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과 경비를 공급자에게 청구하여 공급자로부터 변제 받는다.
 - 3.1.3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계약에 의한 본건 서비스의 추가 이행 수용을 거부한다.
- 3.2 공급자의 직원이 Edwards의 현장(site)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 3.2.1 사용되는 자재는 Edwards의 수락 시까지 공급자의 위험 부담 하에 있다.
 - 3.2.2 공급자는 자신 소유의 자산 또는 자신이 통제하는 공장, 장비, 공구 및 문서 등 자산 일체의 보관에 책임을 지며 해당 자산이 적절하게 유지하며 정상적인 작동 상태 및 수리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필요한 증명서와 기록을 보존하도록 한다. 공급자는 해당 자산 일체로 인하여 인적 부상, 손실 또는 사망이나 자산에 대한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및 보관하여본건 서비스를 이행한다.
 - 3.2.3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본건 서비스를 영위하는 모든 인력이 제공되는 서비스에 있어서 적절한 모든 안전 장치와 방호복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 및 착용시킬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Edwards의 서면 동의 없이 Edwards 소유의 또는 Edwards 가 관리하는 공구, 장비 또는 기타 자산을 사용하지 않으며 공급자가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사용 및 안전유지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 3.2.4 공급자는 Edwards의 현장에서 Edwards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며 현장 내에서의 작업의 개시 전에 Edwards의 작업허가가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특히 “금연” 요건 및 기타 위험표지와 같은 부지 내 안전 규칙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직원들은 Edwards 가 요구하는 안전 교육에 참석해야한다.
 - 3.2.5 Edwards는 어떠한 사유 제시 없이 Edwards 현장(site)내에서 작업하는 개인의 이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3.2.6 공급자는 Edwards의 요청 시 자신의 비용으로 공급자에 의한 작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필요한 자재를 제거하고 Edwards 현장을 항상 Edwards에 만족스럽게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한다. 이러한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공급자는 환경 및 폐기물 처리 법규를 포함하는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자신이 본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제대상 및 특별 폐기물을 수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적절한 라이선스 및 등록을 보유함을 보증한다.

4. 대금 및 지급

- 4.1 본건 제품 및 본건 서비스의 대금은 구매주문 상에 명시되며 본건 계약 기간 중 고정되어 변동하지 않는다.
- 4.2 본건 제품 및 본건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는 대금은:

- 4.2.1 부가가치세(VAT 인보이스 수령을 조건으로 Edwards에 의해 지급됨) 또는 기타 판매세를 제외하고
- 4.2.2 본건 제품의 포장, 선적, 운반, 보험 및 인도 비용 일체 및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관세, 사용료, 허가 및 조세(VAT 제외)를 포함한다.
- 4.3 Edwards는 본건 제품의 배송 혹은 본건 서비스의 완성 이후에 공급자가 발행하는 적법하고 정확한 인보이스(정식 구매주문 번호, 배송 서류 번호, 공급자의 VAT 번호 포함)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다.
- 4.4 Edwards는 분쟁이 있거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보이스 상에 포함된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Edwards는 공급자의 Edwards에 대한 대금채권을 Edwards의 공급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EDWARDS 자산

공급자는 공급자가 Edwards의 자산을 보관하게 될 경우 Edwards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유지·조정하여야 하고 Edwards 자산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공급자에 의해 분실, 멸실 또는 손상된 Edwards 자산을 Edwards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한다. 공급자는 자신이 보관하는 관련 Edwards 자산 일체에 Edwards의 상호 및/또는 로고를 날인, 부착 또는 기타 방식으로 표시하여 Edwards의 소유임을 표시한다. 공급자는 이러한 소유권 표시를 유지한 채 Edwards 자산을 공급자의 부지내에 특별히 지정된 지역에 보관하는 것에 합의한다. 공급자는 Edwards의 요청 시 Edwards의 자산을 즉시 반환하며 Edwards의 직원이나 Edwards 자산의 이동을 위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6. 보증 및 개런티

- 6.1 공급자는 본건 제품 및 그 부품 또는 본건 서비스의 이행을 위해 사용되는 자재가 다음과 같음을 보증한다.
 - 6.1.1 명세서와 부합한다.
 - 6.1.2 본건의 목적 또는 Edwards 가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목적에 적합하다.
 - 6.1.3 새것이며 사용된 적이 없고 양호한 자재와 숙련된 기술이 사용되었으며 만족스러운 품질의 것이며 어떠한 결함(잠재적 혹은 기타의 결함 등)도 없다.
 - 6.1.4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서비스(서비스의 이행에서 사용된 모든 부품 또는 자재 포함)와 관련한 모든 법적 및 규제 요건에 부합한다.
 - 6.1.5 본건 제품 또는 부품이나 자재의 사용, 보관, 운영, 수송 및 처리와 관련한 모든 적절한 정보, 경고, 지시사항 및 문서가 첨부되었다.
 - 6.1.6 관련 규정 및 명령, 지침을 준수하며 이를 적절하게 표시하였다.
 - 6.1.7 REACH 규정(Regulation (EC) No 1907/2006)의 일부로 공표된 고위험물질 후보목록에 포함된 어떠한 물질도 중량의 0.1%를 초과하여 함유하지 아니한다.
- 6.2 본건 제품 및 본건 서비스의 이행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자재에 추가로 및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는 다음을 행한다.
 - 6.2.1 현재 및 장래의 잠재적인 위험이나 위험 물질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유독성, 인화성, 흡입이나 직접 접촉 및 직접 또는 간접적 사용으로 인한 유해효과를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음)을 전부 명시한다.
 - 6.2.2 이행되어야 하는 가장 적절한 안전 수칙과 관련한 세부사항(그 사용이나 처리 관련 사항 포함)을 제공한다.
 - 6.2.3 해당 유해 물질을 포함한 본건 제품을 처리하거나 이에 노출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험하거나, 독성이 있는 등 유해한 본건 제품의 보관 용기에 확연하게 눈에 띄도록 위험표지(라벨)를 적절히 부착시킨다.
 - 6.2.4 본건 제품의 공급이나 본건 서비스 공급 관련 자재의 사용 전에 Edwards에 오존파괴물질을 사용하여 제작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제품이나 자재에 대하여 통지한다.
- 6.3 공급자는 모든 서비스(설계 및 디자인 작업을 포함함)가 (i) 공급자 산업군에서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술자에 의해 최선의 관행, 기술과 주의로 안전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전문적으로 수행될 것이고, (ii) 모든 안전 관련 법률과 규정, 정보, 경고사항을 준수하여 이행되며 (iii) 본건 서비스의 목적물인 완성된 작업이 자재 및 기술상의 어떠한 결함도 없으며 목적에 적합할 수 있도록 완성할 것임을 보증한다.

- 6.4 계약 등에 의해 Edwards가 별도로 보유하는 기타 권리를 유지한 채, Edwards의 선택하에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교체 또는 수리하고 본 제6 조에 명시된 보증의무 위반으로 Edwards에게 발생한 결함, 불이행 또는 기타 손실을 본건 제품의 수락일 또는 본건 서비스 이행 완료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Edwards에게 배상하는 방식으로 하자를 시정 및 보완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간(결함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내에 공급자에 의하여위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Edwards는 공급자의 위험 및 비용하에 위와 같은 하자 시정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
- 6.5 공급자는 본 제6 조에 의해 수리, 변경 또는 교체된 부품이나 자재가에 대하여 그러한 수리, 변경 또는 교체의 수락일로부터 12 개월의 기간 이내에 다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Edwards의 재량하에 공급자 자신의 비용으로 교체 또는 수리한다.
- 6.6 공급자는 Edwards가 본건 제품의 후속 사용자 또는 구매자에 대하여 Edwards가 본계약상 갖는 보증에 대한 권리를 이전 혹은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며 공급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계약문서를 체결하는 것에 합의한다.
- 6.7 공급자는 본 계약의 체결에서 모든 수출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준수를 담보한다. 공급자는 본건 제품 및 서비스가 그 배송시에 어떠한 수출 관련 규제의 제약 없이 본 계약에 따라 배송될 것이라는 점, 본 계약에 따른 배송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면허, 승인, 인가, 허가 또는 증명서가 획득될 것이라는 점을 담보한다. 당사자들은 어떠한 수출 관련 규제가 불가항력을 구성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다. 본건 제품 및 서비스의 재수출을 고려하여, 공급자는 Edwards를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공급자는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급된 본건 제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국 서면 확인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6.8 공급자는 Edwards 제품에 사용될 부품 또는 자재에 REACH의 승인 목록(Annex XIV) 또는 제한 목록(Annex XVII)에 있는 물질 또는 (EC) No 1907/2006 (REACH) 규정의 일부로 공표된 고위험 물질 후보 목록(SVHC)에 기재된 물질을 중량의 0.1% 이상 또는 IEC 62474 - 전기기술산업 및 제품 물질 신고에 따라 신고 가능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증한다. 공급자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 2011/65/EU(유해 물질 제한 지침 즉 "RoHS" 지침) 및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신소재 추가 제한 지침 (EU) 2015/863을 준수하는 부품, 구성 요소만을 Edwards 제품에 제공해야 한다. 공급자는 Edwards 요청 시 위와 관련된 적절한 문서 또는 준수 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준수 상태에 변경이 있으면 이를 Edwards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7. 면책 및 보험

- 7.1 공급자는 (i) 본건 제품이나 본건 서비스의 디자인, 설계(Edwards가 제공한 디자인, 설계 제외)의 결함, 본건 제품이나 본건 서비스의 부품 또는 자재나 기술 상의 결함 또는 공급자에 의한 본건 계약의 위반(본건 제품의 배송 및/또는 본건 서비스 이행 상의 지연 포함) 또는 (ii) 공급자, 그 직원, 하수급업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과실, 고의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 발생한 법적 책임, 채무, 손실, 비용(법률 수수료, 변호사 비용 포함), 경비, 손해, 사망 또는 상해등 발생한 일체 손해를 Edwards에게 배상하고, Edwards를 보호하고 면책한다. 단, 동 채무, 손실, 비용, 경비, 손해, 사망 또는 상해가 Edwards의 부주의, 과실(negligence)로 인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 7.2 공급자는 제3자가 위 제6조 내의 보증의 위반이나 본건 제품 및 또는 본건 서비스의 품질 상의 결함에 의해 야기된 상해, 사망 또는 기타 손해를 Edwards에게 청구함에 따라서 Edwards 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Edwards가 결함있는 제품 수취으로 인하여 Edwards에 발생하는 제품 리콜 비용 포함)로부터 Edwards를 면책하는 것에 합의한다.
- 7.3 공급자는 Edwards 에게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자신의 비용부담하에 모든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한다.

8. 지적재산 및 기밀유지

- 8.1 공급자가 Edwards를 위해 시행 또는 준비한 작업이나 Edwards가 공급 혹은 자금을 부담한 금형(tooling)에서 파생된 특허, 상표, 서비스표, 디자인권(등록 여부 불문), 저작권(미래의 저작권 포함) 등 일체 지적재산권 및 이에 대한 신청권은 Edwards에 귀속 하며 공급자는 Edwards의 비용으로 (i) 해당 권리를 Edwards 에게 이전 혹은 취득시키고 (ii) 기타 Edwards가 해당 권리를 신청하고 취득(허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문서를

준비, 실행, 체결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이행한다.

- 8.2 Edwards가 직·간접적으로 공급자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자가 Edwards를 위한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작성, 제조 또는 조달하하는 특정한 모든 제품과 자재(사진, 도안, 삽화, 원판, 양화(positive), 브로마이드, 레코드, 증거, 컴퓨터 프로그램의 물리적 구현장치, 공구(tool)/공구제공 tooling and dies 및 금형을 포함)의 소유권은 Edwards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Edwards의 요청이 있을시 위 제품과 자재들은 그 즉시 무상으로 양호한 상태 그대로 로 Edwards에 인도해야 하며, 공급자는 이러한 제품 또는 자재를 본건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Edwards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폐기처분 할 수 없다
- 8.3 공급자는 Edwards로부터 제공받거나거나 달리 Edwards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취득한 모든 정보와 문서 또는 공급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Edwards와의 본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또는 본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생성 또는 생산된 모든 정보와 문서를 기밀로 유지하고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이들과 Edwards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8.4 위 제8.3 조의 규정은 본 계약의 사유를 불문한 해지 또는 완료, 종료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유지한다.
- 8.5 위 제8.3조의 규정은 공용 도메인(Public domain)이거나 공급자의 채무 불이행 이외의 원인으로 공용 도메인이 되는 정보나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8.6 제8.3조 및 제12.1조를 침해하지 않고, 공급자가 본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맡기는 경우, 공급자는 그 사람이 본 계약의 당사자와 같이 본 조건 제8.1조부터 제8.5조(포함)의 적용을 받는 것을 동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자신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본건 계약의 당사자였다면 청구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하여 한 청구를 포함한 모든 청구, 결과로부터 Edwards를 면책시킨다.
- 8.7 공급자는 본건 제품 및/또는 공급되는 본건 서비스의 이행의 판매, 소유, 재판매 또는 사용이 제3자의 특허권, 디자인권(등록 여부 불문), 저작권, 상표 및 서비스표(등록 여부 불문)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본 보증의 위반과 관련하여 Edwards, Edwards의 직원, 임원, 사원, 대리인, 승계인, 양수인 및 고객("면책 당사자")에 대하여 발생하거나면책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모든 로열티나 사용료(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범위까지) 및 모든 손해, 경비, 비용, 손실 또는 경비로부터 면책 당사자를 면책하고 보호하기로 한다. 공급자는 본건 제품 및 본건 서비스가 제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에 대한 방어에 있어서 면책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바와 같은 모든 지원과 조력을 제공한다. Edwards가 본 보증조항에 의한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Edwards는 어떠한 책임, 의무 부담 없이 서면 통지로 본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한다.
- 8.8 공급자는 Edwards의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자신의 광고, 인쇄물 또는 서신 상에 Edwards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본 계약의 어떠한 사항도 공급자에게 Edwards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Edwards의 상호, 상표 또는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9. 특별 공구(SPECIAL TOOLS), 지그(JIGS) 또는 정착물(FIXTURE)

특별 공구, 지그(JIGS), 정착물(FIXTURE)이, Edwards를 위해 특별히 설계, 준비 또는 생산된 경우, 이와 같은 물품들은 다른 사람(법적으로 혹은 그 외) 혹은 다른 법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며 Edwards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분해, 변경 또는 파손되지 않는다. Edwards는 공급자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Edwards가 지명하는 제3 자에게 양도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해당 물품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Edwards의 소유 자산이 된다.

10. 해지

- 10.1 Edwards는 다음과 같은 경우 통지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부지에 들어가 Edwards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10.1.1 공급자가 본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경미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본건 계약 상의 보증을 위반한 경우. 본건 계약6조, 7조, 8조, 제11조, 제12.2 위반 및 기타 본건 계약 본건 계약의 이행이 현저히 불가능하게 된 경우
 - 10.1.2 어음·수표의 부도 또는 제3자로부터에 가압류, 가처분, 압류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공급자에 대한 워크아웃, 회생, 파산절차 등 이에 유사한 절차의 개시가 신청된 경우, 공급자의 자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관재인, 관리인, 경영 관리인 또는 매니저가 임명된 경우,,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청산하거나, 공급자가 외국법에 의한 유사한 절차에 처하게 되는 경우.

10.2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전에 발생한 Edwards 또는 공급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 ATLAS COPCO 행동강령 및 책임있는 사업체 연합 윤리강령

11.1 공급자는, Edwards가 Atlas Copco 행동강령(Atlas Copco Code of Conduct)을 준수하고 사업윤리, 노동환경, 안전성, 환경보호 등의 분야를 다루는 책임 있는 사업체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RBA 윤리강령을 채택함을 확인한다. 공급자는 Edwards에게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Atlas Copco의 행동강령(Atlas Copco Code of Conduct, www.atlascopcogroup.com/en/sustainability/living-by-the-highest-ethical-standards/code-of-conduct에서 확인)과 RBA 윤리강령(RBA Code, www.responsiblebusiness.org에서 확인)을 준수해야 함에 동의한다

11.2 Edwards는 공급업체가 Atlas Copco 행동강령 및 RBA 윤리강령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또는 Edwards가 공급업체의 위반을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급업체와의 사업 관계 및 모든 관련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구제 조치가 가능한 위반의 경우, Edwards가 그러한 위반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 Edwards가 지정한 구제 기간 내에 그 위반을 시정하지 못하면 공급업체와의 사업 관계 및 모든 관련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Edwards는 시정을 위한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11.3 공급자는, 영국의 뇌물법(UK Bribery Act 2010) 및 미국의 외국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Act)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반 수뢰 및 반 부패에 관련된 모든 법률,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진실성과 상호 존중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하며("관련 요구사항"); 본 계약의 기간 동안, 공급자의 근로자, 임원, 대표자, 하청업자 및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급자를 대표하는 자가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UK Bribery Act 2010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포함하여 공급자의 정책과 절차를 유지하고, 본 계약에 대한 협상과 체결에는 어떠한 종류의 중개인(intermediary)이 없음을 보증한다. 본 조항의 위반은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Edwards는 공급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1.4 공급자는 Edwards에 공급하는 제품에 들어간 탄탈, 주석, 텅스텐, 금, 코발트로 인해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인근 국가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가담한 무장 단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금이나 이익이 돌아가지 않음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이러한 광물의 원산지(source)와 공급체인(chain of custody)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다하여야 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Edwards에게 상당한 주의의무 이행 방법(measures)을 제공한다.

12. 일반사항

12.1 공급자는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Edwards 직원, 하수급업자(contractors), 대리인, 전문고문(professional advisors) 그리고 다른 주체(individuals)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PIPA), EU 일반 정보보호법령(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및 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법상의 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2.2 공급자는 Edwards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을 양도하거나 하도급 맡길 수 없다. Edwards는 언제든지 본건 계약 또는 본건 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 이전, 위탁처리할 수 있다.

12.3 공급자는 Edwards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Edwards에 대한 채권을 제3 자에게 판매, 양도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2.4 시간은 공급자에 의한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필수적 요건이다(Time is of the essence).

12.5 제3 자(당사자들과 그들의 적법한 승계인과 양수인을 제외한 자)는 본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12.6 Edwards가 본 계약에 의한 권한,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행사하지 않거나 이를 지체한다고 하여도 이로써 당해 권한, 권리 또는 구제수단의 포기해석되지 않으며 계약에 의한 권한,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단일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행사하더라도 당해 권한, 권리 또는 구제수단 혹은 기타 다른 권한,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추가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Edwards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Edwards의 권리 포기(waiver)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않는 다.

- 12.7 계약은 본건 제품 및/또는 본건 서비스의 매매와 관련하여 Edwards 와 공급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Edwards 가 이에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 12.8 모든 계약, 수락, 서신, 명세서 및 기타 문서는 영문 혹은 국문으로 작성되며 대한민국법에 의해 적용, 규율 및 해석되고, Edwards 와 공급자는 본 조건에 의해 대한민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적 합의관할권에 합의한다.
- 12.9 Edwards는 언제든지 구매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한다. 공급자의 채무불이행에 기인한 취소나 변경을 제외하고, Edwards는 공급자에게 변경 또는 해지 당시의 공급자의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한다. 단, 이러한 보상은 예상 수익(anticipated profits)의 손실(loss)이나 경제적 손실, 파생손실 또는 간접손해, 특별손해, 결과손해(consequential loss)을 포함하지 않으며, Edwards는 어느 경우에도 위와 같은 예상수익의 손실이나 경제적 손실, 파생손실, 간접손해, 특별손해 기타 결과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12.10 계약의 어느 조건이나 규정이 관할지 법원에 의해 무효 또는 실행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계약의 나머지 규정들은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완전한 효력과 효과를 유지한다.
- 12.11 본 조건 상의 표제는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그 해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2.12 본건 계약에 인용된 모든 법률, 규정 및 행동강령(Atlas Copco Code of Conduct)등은 수정 또는 변경, 개정, 재제정 사항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 칙

- 1. 본 계약은 _____ 일 로 부터 1 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1 개월 전까지 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 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 3. 계약 체결당시 종전의 기본계약은 본 계약체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또한 계약 체결당시 종전의 기본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모든 개별계약은 본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개별계약으로 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에드워드코리아 주식회사

YUN JASON JAEHONG(윤재홍)

312-81-12960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3공단1로96(차암동)





비즈니스 파트너 기준

이 문서에서는 가치 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쳐 책임있는 비즈니스 행동을 지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Atlas Copco Group의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윤리적 요건을 요약해 소개합니다.

Atlas Copco
Group

목적

Atlas Copco Group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산업 부문 기업으로, 현재 전 세계 180여 개 국가에 50,000여 명의 직원 및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룹의 비전은 고객과 공급업체, 그 외 비즈니스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최고로 인정 받고 제1순위로 선택 받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Atlas Copco Group은 우리의 핵심 가치를 준수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며, 우리와 비슷한 가치와 기준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협력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본 ‘비즈니스 파트너 기준’ 문서는 Atlas Copco Group이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적용하는 기본적인 기대 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그룹 행동 규범(Code of Conduct)의 확립을 뒷받침합니다.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는 반드시 본 문서에 서명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행동 규범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Atlas Copco Group 행동 규범(Code of Conduct)의 준수를 약속해야 합니다.

Atlas Copco Group의 행동 규범(Code of Conduct)에서는 다음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Atlas Copco Group은 우리의 모든 사업 거래에 있어 엄격한 윤리 기준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룹의 비즈니스 파트너에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는 반드시 우리 그룹의 행동 규범(Code of Conduct)을 따라야 합니다. 당사는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품질, 비즈니스 윤리, 인권, 환경 및 자원 효율성과 관련한 당사의 기준을 공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심사와 감사를 실시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Atlas Copco Group이 사전에 서면으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당사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당사 행동 규범(Code of Conduct) 위반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안은 보고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본 비즈니스 파트너 기준은 당사 행동 규범(Code of Conduct)을 바탕으로 하며, 행동 규범은 Atlas Copco Group이 지지하는 다음과 같은 주요 국제 윤리 프레임워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Atlas Copco Group의 행동 규범(Code of Conduct)을 비롯해 본 비즈니스 파트너 기준에서 참조하는 기타 문서, 그리고 당사의 위법 행위 신고 시스템 SpeakUp은 그룹의 외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atlascopcogroup.com

비즈니스 파트너 요건

공급업체, 하청업체, 합작 투자 파트너, 에이전트, 리셀러, 또는 유통업체는 반드시 우리 그룹 행동 규범 (Code of Conduct)에 따른 그룹의 약속과 기대 사항을 따르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Atlas Copco Group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청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그 하청업체를 평가 및 선정하는 데 있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책임입니다. 요청을 받는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는 반드시 자신들이 어느 하청업체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Atlas Copco Group에 제공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모든 활동에 있어 반드시 자신들이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사업 활동과 고용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tlas Copco Group 요건은 현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보다 그 범위가 넓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해당 비즈니스 파트너는 반드시 추가적인 Atlas Copco Group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Atlas Copco Group의 요건과 관련 법률 및 규정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는 본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Atlas Copco Group에 그러한 상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Atlas Copco Group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의심되는 행동 규범(Code of Conduct) 위반 사항을 신고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룹에는 외부 신고 시스템인 SpeakUp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은 이해관계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신고는 거의 모든 언어로 가능합니다. 그룹 웹사이트에서 SpeakU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1. 환경적 책임 및 기후 행동 실천

비즈니스 파트너는 반드시 승인 받은 환경 관리 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환경적 성과 및 환경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음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생산, 디지털화, 제품 사용, 운송 또는 폐기물 처분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부를 입증하고 행동을 실천해야 하며,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기술의 개발과 촉진을 지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Atlas Copco Group 금지 및 신고 대상 물질 목록 준수

비즈니스 파트너는 반드시 Atlas Copco Group의 금지 및 신고 대상 물질 목록¹을 준수하고, 목록의 업데이트를 팔로우하고,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로 인해 준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 사실을 Atlas Copco Group에 알려야 합니다.

Atlas Copco Group의 금지 물질 목록에는 Atlas Copco Group에 납품되는 제품 또는 일체의 생산 공정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이 식별되어 있습니다.

Atlas Copco Group의 신고 대상 물질 목록에서는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물질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Atlas Copco Group에 납품하는 제품에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물질 목록에는 분쟁 광물²도 포함됩니다. Atlas Copco Group이 요청하는 경우, 분쟁 영향 및 고위험 국가³에서 조달한 분쟁 광물이 1종 이상 포함되어 있는 부속품, 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는 반드시 OECD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⁴)에 따라 실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¹ 그룹의 금지 및 신고 대상 물질 목록은 그룹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atlascopcogroup.com

² 컬럼바이트-탄탈럼(콜탄), 석석(cassiterite), 금, 윌프레마이트(wolframite)나 그로부터 유래된 주석, 텅스텐과 탄탈럼(광물과 금속 모두), 또는 그 외에 EU(유럽연합) 또는 미국이 분쟁광물(conflict mineral)로 분류하는 기타 광물.

³ 분쟁 영향 및 고위험 지역은 무장 분쟁 또는 취약한 분쟁 후 상태에 있는 지역, 파탄 국가처럼 통치 및 치안이 취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역, 인권 침해를 포함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국제법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⁴ 분쟁 영향 및 고위험 지역에서 조달된 광물의 책임감 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3. 인권 지지 및 존중

비즈니스 파트너는 반드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인권 침해에 연루되어 있지 않으며, Atlas Copco Group이 지지하는 주요 국제 윤리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현대판 노예 제도 또는 강제 노동 금지

Atlas Copco Group은 강제 노동 및 비자발적 노동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현대판 노예 제도를 일체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채무 노역 또는 그 외 다른 형태의 강압을 이용해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여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Atlas Copco Group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고용 기간 중 직원들에게 금전, 또는 여권이나 학업 증명서 등과 같은 원본 서류를 고용주에게 맡기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5. 아동 노동 금지

Atlas Copco Group은 아동 노동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법적 고용 연령 미만인 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의무 교육 이수 연령 미만이거나 15세 미만인 자는 일체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지 법률에서 더 높은 고용 가능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규에 따라야 합니다. 허가 받은 미성년자의 경우, 경영진에는 관련 법적 요건에서 정하는 최저 기준을 준수해 해당 미성년자의 나이에 적합한 근무 조건, 근무 시간 및 임금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의 경우 최저 연령은 18세입니다.



6. 차별 폐지

비즈니스 파트너는 반드시 공평한 기회와 공정성, 다양성을 지지하고, 나이, 능력, 민족적 배경, 성별, 성별 정체성, 국적, 정치적 견해, 종교, 또는 성적 지향에 관계 없이 모든 직원들이 어떠한 고용 결정에서든 자신의 능력과 자격에 따라 대우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7.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보장

비즈니스 파트너는 항상 직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작업장 구내와 공장 내 환경은 작업자가 화재 예방을 포함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교육 및 명확한 역할 관련 내용이 기술된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원용 시설은 반드시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개인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직원들을 대신해 안전을 보장하고 직장 내 환경으로 인한 사고 및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응급 처치 및 개인 보호 장비 및 올바르게 (해당 경우) 인증 받은 공구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8. 공정 임금 및 적절한 근무 시간

모든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근무 시간, 초과 근무, 휴식 시간, 휴가, 임금 및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최소한 관련 법률 요건 및 관련 단체 교섭 합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9.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

비즈니스 파트너는 반드시 직장 내 문제 및 보수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들이 경영진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단체 교섭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할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Atlas Copco Group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직원에 대한 차별을 일체 용납하지 않습니다.



10. 지식 재산(IP)

비즈니스 파트너는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도메인명, 노하우 및 영업 비밀 등과 같은 지식 재산권(IP)이 중요한 비즈니스 자산을 이해하고, Atlas Copco Group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며 제3자에게 지식 재산과 관련한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11. 부패 금지

비즈니스 파트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윤리적인 비즈니스를 촉진하고 모든 형태의 부패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반드시 현지 법률과 국제 부패 금지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절대 Atlas Copco Group의 직원 또는 공무원과 같은 제3자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무언가를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와 Atlas Copco Group 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 상충에 대해 항상 Atlas Copco Group에 알려야 합니다.



12. 반경쟁적 행위 금지

비즈니스 파트너는 반드시 공정 경쟁을 약속하고, 가격 책정, 입찰, 시장 분할, 또는 그 외에 경쟁을 방지 또는 제한하려고 시도하거나 경쟁을 방지 또는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해 경쟁사와 논의하거나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13. 무역 준수 의무 준수

비즈니스 파트너는 핵무기 비확산, 미사일 기술, 화학 및 생물 무기에 관한 국제 조약 및 합의와 더불어 모든 관련 국제 무역,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 규정 및 체제를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수출 또는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는 적절한 세관 신고를 보장하고, 모든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며 관세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올바른 방식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14.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비즈니스 파트너는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직원 및 고객의 개인 데이터를 책임감 있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 사용 및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무단 사용 또는 공개로부터 개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 장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준수 선언문

Atlas Copco Group은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가 우리 행동 규범(Code of Conduct)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의 사회 및 비즈니스 윤리, 환경 기준 및 약속을 공유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 그룹의 비즈니스 관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우리의 표준 및 기준에 부합되도록 바꿀 의사가 없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Atlas Copco Group은 우리 그룹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본 비즈니스 파트너 기준의 준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서 기록을 보관하거나 Atlas Copco Group과 함께 실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본 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도와 자발성을 입증해 보일 것을 기대합니다.

위반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직 본 기준 요건을 충족해 가는 과정이고 Atlas Copco Group과 함께 실행 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있다면 본 비즈니스 파트너 기준 문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Atlas Copco Group과 거래를 하려면 비즈니스 파트너와 그 하청업체들은 그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Atlas Copco Group 및 당사의 지정 대리인(제3자 포함)이 본 비즈니스 파트너 기준을 유지하고 준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현장 감사는 항상 비즈니스 파트너의 협조 하에 사전에 조율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하청업체에 대한 현장 감사는 해당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합의 하에 실시합니다.

본인은 아래에 서명한 해당 비즈니스 파트너의 대표이사, 대표자(들)으로서 Atlas Copco Group의 행동 규범에 기초한 본 비즈니스 파트너 기준 문서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로써 해당 비즈니스 파트너가 해당 문서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과 요건을 수락하며 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약속함을 보증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이름: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표해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서명:

서명:

이름(정자체):

직책/부서:

서명 날짜:

참조

그룹 웹사이트:

<https://www.atlascopcogroup.com/en>

Atlas Copco Group 행동 규범:

https://training.involve.com/AtlasCopcoCodeOfConductSite/coc_site.html

Atlas Copco Group은 다음의 주요 국제 윤리 프레임워크를 준수합니다.

- 국제노동기구 노동 기본 원칙과 권리 선언(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www.ilo.org]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www.oecd.org]
- 유엔기업인권가이드(The UN Guiding Principles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www.ohchr.org]
-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www.unglobalcompact.org]
- 유엔국제인권장전(The UN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www.un.org]

Atlas Copco AB (publ)
SE-105 23 Stockholm, SWEDEN
전화번호: +46 8 743 80 00
VAT 번호: SE556014272001
atlasopcogroup.com

Atlas Copco
Group